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2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9월 8일

나. 발 의 자: 김지연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9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건전한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과 늘어나는 청소년시설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기 위해 관내 청소년 시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 명: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 시설의 설치·운영, 운영의 원칙, 시설의 이용 등(안 제4조 ~ 제6조)
- 사용료 등, 운영 위탁, 수탁신청, 수탁자 선정 등(안 제7조 ~ 제10조)
-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11조 ~ 제13조)
- 위·수탁 협약, 운영 지원, 수탁자의 의무(안 제14조 ~ 제16조)
-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 운영규정의 제정 등(안 제17조 ~ 제19조)
- 정산보고, 수당 등, 시행규칙(안 제20조 ~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테사)

□ 제정 배경 및 취지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시설의 구체적 종류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률에 따라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은 다음과 같음.
 - 이에 영등포구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정(2007. 9. 27.) 당시 제5장(제26조~제31조, 총 6개 조문)에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음.
- 다만, 앞서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시설은 개별 법령에 따라 다양한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영등포구립 청소년시설 또한 3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총 10개소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에 제정되는 등 청소년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기본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6개의 조문만으로 청소년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 실제, 서울시 1)20개 자치구에서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1) 강남, 강동,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

-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관리하고자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청소년, 청소년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단체, 수탁자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정의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함.
- 안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는 영등포구립 청소년시설의 명칭·기능·위치를 별표에 명시함.
- 안 제5조(운영의 원칙)는 기본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청소년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함.
- 안 제6조(시설의 이용 등)는 ▲이용자 구분 ▲이용 제한 사유 ▲사용시간 규정 등을 통해 청소년시설의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함.
- 안 제7조(이용료 등)는 이용료 및 강습료 부과·징수 근거 및 반환기준을 마련하였고,
 - 안 별표 2 및 별표 3(이용료 상한 및 감면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이용료와 감면율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 및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함.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운영 위탁, 수탁신청, 수탁자 선정 등)는 ▲위탁근거 마련 ▲수탁신청 절차 ▲수탁자 선정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탁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위원회 구성·운영 및 제척·회피 등)는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포함하여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
- 안 제14조(위·수탁 협약)는 협약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탁자의 의무와 수탁 내용을 명확히 함.
- 안 제15조(운영 지원)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 또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안 제16조(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자의 운영 책임과 관리 의무를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
-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 운영규정 제정 등)는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
- 안 제20조(정산보고)는 수탁자가 보조금 집행 결과를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복 규정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제5장(제26조~제31조)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 조문에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청소년시설 운영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청소년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이를 통해 청소년시설 운영의 체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등포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3
------------	-----

발의연월일: 2025. 9. .

발 의 자: 김지연, 차인영, 유승용,
이순우, 전승관, 정선희
의원(6인)

1. 제안이유

건전한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과 늘어나는 청소년시설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기 위해 관내 청소년 시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 명: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 다. 시설의 설치·운영, 운영의 원칙, 시설의 이용 등(안 제4조 ~ 제6조)
- 라. 이용료 등, 운영 위탁, 수탁 신청, 수탁자 선정 등(안 제7조 ~ 제10조)
- 마.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11조 ~ 제13조)
- 바. 위·수탁 협약, 운영 지원, 수탁자의 의무(안 제14조 ~ 제16조)
- 사.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 운영규정의 제정 등(안 제17조 ~ 제19조)
- 아. 정산보고, 수당 등, 시행규칙(안 제20조 ~ 제22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서울특별시가 영등포구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보호·지원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서울특별시가 영등포구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

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우선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하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 등

제6조(시설의 이용 등)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 사용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다른 사용자 또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

하는 경우

④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 ~ 22:00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시설 및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이용료 및 강습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불가하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납부받은 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수탁기간 중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청

소년단체에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청소년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제9조(수탁 신청)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부
2. 재산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원본 1부
4.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0조(수탁자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

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청소년 복지, 교육 또는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복지, 교육 또는 예산, 법률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청소년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시설

을 위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탁대상시설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심사 및 평가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재계약 심사의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위·수탁 협약)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위탁대상시설 및 계약기간
3. 수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위협의 예방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제14조의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때에는 취소 또는 해지하

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기로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구청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등 사무의 처리와 지도·감독 등의 기준을 규칙 등으로 정하고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정산보고) 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분기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종 류	기능	시 설 명	위 치
청소년 활동	청소년 수련시설	모두휴청소년야영장	충남 청양군 대치면 청산로 690-13
		청소년문화의집	영등포로64길 15
	청소년 전용공간	청소년자율문화공간 (라라랜드)	도영로22길 36, 지하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언더랜드)	여의동 5 지하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선유랜드)	양평로22길 21
		청소년자율문화공간 (대림플레이)	디지털로 450, 2층
		청소년자율문화공간 (당산하이)	영등포로22길 3-8, 4층
청소년 복지	청소년 상담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영로22길 36, 해광빌딩 1층~3층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도영로22길 36, 해광빌딩 1층~3층
		학교폭력예방센터	도영로22길 36, 해광빌딩 1층~3층

[별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이용료 상한 및 감면기준 (제7조 관련)

1. 시설이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이용료 구 분	대 상		1회(1시간) 이용료	월 이용료(1회 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대학생,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초·중·고생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어린이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수영장	대학생, 성인		4,300	17,500	35,000	52,500	70,000	87,500	105,000	
	초·중·고생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어린이		1,800	7,500	15,000	22,500	30,000	37,500	45,000	
헬스장	대학생, 성인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고등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시설 대관	강당, 공연 장 등	100석 이내	1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300석 이내	3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유사시설 준용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부대시설		유사시설 준용	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						
비 고	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이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이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이용료 할인(월 이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 19 –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 감면기준(제7조 관련)

대상자	감면율	증빙서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50%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사회복지시설입소 증빙서류 - 병역명문가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의 청소년	30%	

※ 단, 고유목적사업 실현을 위해 자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감면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시설 수탁 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희망시설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위탁체 현황(재산현황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청소년시설 수탁 운영 연장(재계약) 신청서				
위탁시설명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위탁연장기간				
위탁연장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 수탁 운영 연장(재계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위탁체 현황(재산현황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 위탁 운영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만 제출		